

의안번호	2204526
의 퇴 인	김남희의원
회 답 일	2024.12.10.
추 계 번호	24D4184

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재개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5억 9,700만원, 2030년 9억 6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4억 7,600만원(연평균 2억 5,0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(안 제8조 및 제12조제2항)	9,292	—	929	929	929	12,079	2,416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(안 제14조)	305	—	31	31	31	397	79
합 계	9,597	—	960	960	960	12,476	250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제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)	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2조제2항(출생등록부의 관리)	시·읍·면의 장이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	의무규정
3	안 제14조(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)	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)	○	—
2	안 제12조제2항(출생등록부의 관리)		
3	안 제14조(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내출생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업무는 기존 관련 인력이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건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(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, 2018. 11.)에 따르면 국내출생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이주아동(만 18세 미만, 2017. 12. 말 기준)의 수는 최대 13,239명에서 최소 5,295명으로 추정됨
 - 제정안은 출생등록신청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·읍·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출생등록신청업무는 가족관계등록사무¹⁾의 예를 참고했을 때 기존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출한 시스템 개발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산출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현행 가족관계등록사무는 1,577여개 시(구)·읍·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2,164여개 주민센터에서 개인의 출생, 혼인, 사망신고 등의 기록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(안 제8조 및 제12조제2항)

□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- (시스템 개발 비용) 출생등록신청, 출생등록신청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등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이 전산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59억 4,197만원으로 예상²⁾
- (전산장비 구입 비용)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가상화 서버 및 DB서버 등 서버장비, 가상화디스크 및 이미지스토리지 등 저장장치, OZ뷰어 등 리포팅툴 솔루션 등에 대한 구입 비용은 33억 4,984만원으로 예상
- (유지보수 비용)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개발 및 전산장비 구입 후 2년째(2028년)부터 비용의 10%³⁾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2]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스템 개발	5,942	-	-	-	-	5,942
전산장비 구입	3,350	-	-	-	-	3,350
유지보수비	-	-	929	929	929	2,788
합 계 (a)	9,292	-	929	929	929	12,079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(안 제14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재개발이 필요함

- (시스템 재개발 비용)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공을 위

2)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망정보를 제출하게 될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 기관 4,200개소(2023년 기준)로 예상하여 최대치를 추정한 것으로, 사망 미발생기관 고려시 비용 감소 예정

3)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 10~15%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『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』, 2024년, p178)

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재개발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재정 소요는 3억 548만원으로 예상

- (유지보수 비용)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 후 2년째(2028년)부터 구축비용의 10%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

[표 3]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시스템 재개발	305	-	-	-	-	305
유지보수비	-	-	31	31	31	92
합 계 (b)	305	-	31	31	31	397

주: HW 유지보수비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, 장비를 구입한 해(2026년)의 2년째인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재개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24억 7,600만원(연평균 2억 5,0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시스템 구축 (a)	9,292	-	929	929	929	12,079	2,416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재개발 (b)	305	-	31	31	31	397	79
합 계 (a+b)	9,597	-	960	960	960	12,476	250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